

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개정이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 및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의 변경,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충청북도 무형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6조, 제7조)
- 도지정무형유산,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(안 제20조, 제21조)
- 도지정무형유산의 보호·육성 (안 제35조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필요성

-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체제 변환에 따라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 및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제명 변경,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- 무형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,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인정 해제 시 범죄경력조회, 도지정무형유산의 보호·육성 관련 우수 이수자에 대한 예산지원, 전승공동체에 대한 예산지원, 도지정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시 위탁기관 대상을 추가 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1조 목적, 안 제2조 정의 규정은 국가유산체제를 전환하는 내용의 상위법인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 및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무형유산법」이라 한다)의 개정과 시행에 따라 제명인 「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“무형문화재, 문화재청장, 전수교육조교” 등의 명칭을 “무형유산, 국가유산청장, 전승교육사” 등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음.

- 안 제5조는 도지사는 「무형유산법」 제7조에 따라 연도별 무형유산 보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, 시행계획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,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.
- 안 제30조는 도지사는 「무형유산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도지정 무형유산의 보유자, 명예보유자, 전승교육사의 인정과,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사유 확인 시 충청북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자들의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조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35조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보호·육성 관련 사항으로 전수교육 이수자 중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예산지원 근거, 전승공동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,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,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제도 및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음.

안 제35조 전수교육 우수 이수자 지원 등 신설

제1항 ~ 제3항 : 현행 유지

제4항 도지사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,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항 : 현행 유지

제6항 도지사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항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의 지원내용 및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- 안 제38조는 도지정무형유산의 공개의무 관련 사항으로 도지사가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바, 위탁기관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을 추가하여 위탁기관 대상을 확대하였음.

안 제38조 제6항 위탁기관 및 단체 대상 확대

1호 ~ 2호 : 현행 유지

3호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제명 변경,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개정안에 추가로 신설된 내용의 경우 조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특히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교육 우수 이수자와 전승공동체에 대한 선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·보존·진흥에 다양하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-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여 도지정무형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진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붙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